

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48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- 나.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다.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22. ~ 9. 13.(22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전액 반납 시까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41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박 병 준